

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의안번호	제193호	제 출 자	논산시장
제 출 일	2022. 11. 14.	회부연월일	2022. 11. 14.
<b>1. 제안이유</b> <p>○ 「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」 개최실적 저조로 논산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.</p>			
<b>2. 주요내용</b> <p>○ 가.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비상설 구성(안 제3조제1항) 나. 위원회 비상설 구성에 따른 위원의 임기 변경(안 제4조)</p>			
<b>3. 검토의견</b> <p>○ 이 조례는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고,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</p> <p>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제159조,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36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</p>			